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칭중 "의료업무등의"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 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장려수당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시체화장업무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월 180,000원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월 150,000원
하수.폐수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월 120,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1월1일 개정된 조례는 199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4. 1. 26.

제안자 : 박만순의원외 5인

1. 수정 이유

지방공무원 수당지급과 관련 해석상의 오류로 지급대상자에 대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급입법 조문을 명문화 함과 조례의 역사성을 부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2. 수정 주요 골자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 "시행하되, 1994년 1월
개정된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안 부칙조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부칙 조문 중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를

"시행하되, 1994년 1월 개정된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로 한다.

- 현 행

기준재정수입액(세입) 및 기준재정수요액(세출)을 산출하여 부족분을 전액 지원하고, 회계년도말 집행액 전액에 대한 사업종료(실적) 보고를 받음.

- 개 선

기준재정수입액 및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여 부족분을 전액 지원하고, 회계년도말 사업종료(실적) 보고시 학교의 재정수요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부분의 집행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함.

3. 검 토 의 견

(전문위원 김영만)

- 상위법인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에 맞지 않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보조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 한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됨.
- 한편 신설된 제8조 제2항에서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기준재정수입액(세입) 및 기준재정수요액(세출)을 산출하여 부족분을 전액 지원하되, 회계년도말 집행현액 전액에 대한 사업종료(실적) 보고를 받던것을, 학교의 재정수요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부분의 집행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한 것은, 자율화시책에 부응하여 작은 부분인 운영비에 대해서부터라도 사학의 자율성 신장을 물론 재정에 관한 책임성 확보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 회계년도 말 사업종료실적보고시 운영비 부분의 집행에 대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게되면 운영비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확실한 보완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 없 슴 "

5. 토 론 요 지 : " 없 슴 "

6. 심 사 결 과 : " 원 안 가 결 "

7.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가.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증 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